



#### 4. 참고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09. 9. 10 ~ 9. 29

나. 관련법령 및 근거

- 『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』
- 『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』 시행령
- 『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』 시행규칙
- 유통산업 발전법
- 행정절차법
- 「도로법」, 「주차장법」, 「건축법」
- 고성군주차장 조례
- 고성군 보조금관리조례

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라. 합 의 : 관련부서 합의됨

마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(상위법과 동일함)

#### 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안은 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”에서 시군에 위임된 기준을 법령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여 재래시장의 원활한 관리·운영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 지역의 어려운 상권 회복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
- 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” 제15조와 경남도가 2007년 6월 11일 시군에 시달한 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표준 조례안”에는 군수가 농어민 직영매장을 설치·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, 본 조례 제정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## 6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문 : 이 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 제정안 제출 시기가 늦은 사유는?
- 답 :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업무를 맡은 후 당장 시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챙겼습니다.
- 문 : 조례 표준안에 있는 “농어민을 위한 직매장 설치 지원 근거”를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?
- 답 : 이번 조례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판매시설을 시장 안에서 만들어 할 수 있으며,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.

## 7. 토 론 : 없음

## 8. 심사결과 :

- 2010. 3. 3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